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
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
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
대통령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소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6. 2. ~ 7. 12.) 예정
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
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의 개정)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“이내”를 각각 “이내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)”로 한다.

제2조(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의 개정)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2제1호 중 “이내”를 “이내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)”로 한다.

제3조(「주택법 시행령」의 개정)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호 중 “이내”를 “이내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)”로 한다.

제4조(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이내”를 “이내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의2(일시적 등록기준 미달)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“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24조의2(일시적 등록기준 미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 당하는 자의 사망·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	1. ----- ----- ----- ----- 이내 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 일 이내)----- -----
2. 별표 1에 따른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~ 다. (생략) 라.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 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	2.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----- -----

른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 는 자산평가액)기준에 미 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 인 경우. 다만, 골재채취업 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.	----- ----- ----- 이내 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 우에는 180일 이내)----- --. --.
--	---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0조의2(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)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“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50조의2(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·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	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내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)</u> ----- -----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)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“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.	제19조(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기술인력의 사망·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제14조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 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<u>이내</u> 인 경우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내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 는 180일 이내)---</u>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해양조사·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)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“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·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.	제17조(해양조사·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내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)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	
연락처	(044) 202 - 6425
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
연락처	(044) 201 - 3546
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	
연락처	(044) 201 - 3384
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	
연락처	(044) 200 - 5357